

■ 분야별 건축환경관련 인증 및 제도 요약-1

	건축환경관련 인증 제도														
	녹색건축인증 (구 : 친환경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F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수행 및 제출 시점	· 예비인증 :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전 인증 평가 가능한 도서로 상시 접수가능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으로 심의 및 인허가등 시기에 관계 없이 예비인증 신청가능) 근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318호" 제 11조		· 예비인증 : 인증 평가 가능한 도서 완료시 상시 접수가능 / 정해진 시기 없음	· 예비인증 :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이후 (단 의무적 인증취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인증가능)											
	· 본인증 : 인증 평가 가능한 공사 완료 단계 또는 준공 후 접수가능 / 정해진 시기 없음 근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318호" 제 6조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녹색건축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 건축법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의무대상 (공통)	· 3,000㎡ 이상 공공건축물 (업무시설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취득, 그 외 일반등급)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5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1조의3 *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우수등급기준)		· 3,000㎡ 이상 공공건축물 : 1등급 이상 · 공공기관 공동주택 신축 및 별동 증축 : 2등급 이상 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 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③항 / 2015.7.29.이후 사업승인 접수 부터 적용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법 "법률 제13782호" 제39조 (성능등급 표시)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216호" 제 58조 (1,000세대 의무적용 근거) · 각 지자체 가이드라인기준, 심의기준, 조례 등														
시행 연혁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연혁 -최초고시 : 2005.03.01. / 1차 개정 : 2008.05.27. / 2차 개정 : 2012.07.01. (주택성능등급 분야통합, 부기중 변경,채광율등) · 녹색건축 인증기준 연혁 -3차 개정 : 2013.06.28. 녹색건축 인증기준 (주택성능등급분야 8번 항목대로 분리) / 4차 개정 : 2014.12.05. / 5차 개정 : 2016.09.0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연혁 -최초고시 : 2001.08.29. / 1차 개정 : 2005.01.24. / 2차 개정 : 2008.04.07. / 3차 개정 : 2009.12.31. (3차 개정 이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폐지) 2013.05.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013.05.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2013.08.31. 이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평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로 변경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연혁 -최초고시 : 2008.07.24. / 1차 개정 : 2010.09.20. 2차 개정 : 2013.12.24. / 3차 개정 : 2014.10.1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등 -2015.08.03.시행 (위 시행지침에서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등으로 법령 변경)											
	· 각 지자체 가이드라인기준, 심의기준, 조례 등														
현재 적용기준	2016.09.01.(시행일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341호)	2016.02.19.(시행일 기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2015.08.03.(시행일 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등	· 지능형 건축물인증 기준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시행일 기준</td> <td>2006.07.18. ~2010.07.14</td> <td>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 부시행지침 및 기준 제정</td> </tr> <tr> <td>2011.12.01</td> <td>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td> </tr> <tr> <td>2012.08.17</td> <td>인증기준 일부개정</td> </tr> <tr> <td>2016.07.01</td> <td>인증기준 일부개정</td> </tr> </tbody> </table> *2016.07.01. 이후 부터 기준 용도별 인증기준에서 주거/비주거의 기준으로 변경됨.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06.07.18. ~2010.07.14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 부시행지침 및 기준 제정	2011.12.01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2012.08.17	인증기준 일부개정	2016.07.01	인증기준 일부개정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06.07.18. ~2010.07.14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 부시행지침 및 기준 제정													
	2011.12.01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2012.08.17	인증기준 일부개정													
	2016.07.01	인증기준 일부개정													
특기사항	위 시행시기 기간에 예비인증을 접수한 사업은 당시 기준의 인증기준으로 본인증 적용	위 시행시기 기간에 예비인증을 접수한 사업은 당시 기준의 인증기준으로 본인증 적용	위 시행시기 기간에 예비인증을 접수한 사업은 당시 기준의 인증기준으로 본인증 적용	위 시행시기 기간에 예비인증을 접수한 사업은 당시 기준의 인증기준으로 본인증 적용											
법령검색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 법제처 · 녹색건축인증기준 ⇒ 국토교통부 (정보마당,법령정보)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법제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 에관공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법제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	· 건축법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법제처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 법제처 (정보마당,법령정보) ·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 라인 ⇒ 서울시											

■ 분야별 건축환경관련 인증 및 제도 요약-2

	건축환경관련 인증 제도																																																								
	서울시 에너지 성능 (e-BESS or E.P.I 분야 절감기술 적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 에너지 소비총량제 (ECO2-0D)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구:친환경주택평가, 그린홈)																																																					
수행 및 제출 시점	<table border="1"> <tr> <td rowspan="2">· 서울시 건축심의전</td> <td>주거</td> <td>주택</td> <td>e-BESS</td> </tr> <tr> <td>비주거</td> <td>부대시설</td> <td>절감기술</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e-BESS</td> </tr> </table>	· 서울시 건축심의전	주거	주택	e-BESS	비주거	부대시설	절감기술	e-BESS				· 사업계획승인 접수전	·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 서울시 건축심의전	주거		주택	e-BESS																																																					
	비주거	부대시설	절감기술																																																						
e-BESS																																																									
근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6조 ①항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 9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4조 "법률 제1412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28호" 제 17조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주택법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의무대상 (공통)	<p>· 서울시 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10㎡이상이거나 21층 이상</p> <p>1.공동주택 주택 : e-BESS 적용 2.공동주택 부대시설 : E.P.I 절감기술 적용 3.비주거 건축물 : e-BESS 적용</p> <p>*e-BESS : 주거,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교육연구 시설(학교) 5개 용도만 평가가능</p> <p>근거 :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p>	<p>·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1,000 세대 이상</p> <p>*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1,000세대 이상 근거)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 3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1,000세대 이상 근거)</p>	<p>·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p> <p>*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1108호"</p>	<p>·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p> <p>*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대통령령 27602호" (30세대 이상적용 근거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 "대통령령 2617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대통령령 27216호"</p>																																																					
시행 연혁	<p>· 서울시 에너지 소비총량제 연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시행일 기준</td> <td>2011.07.20</td> <td>BESS : 공공건축물 3천㎡이상, 민간건축물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업무시설,공동주택)</td> </tr> <tr> <td>2013.04.01</td> <td>BESS : 연면적 3천㎡이상 신축 업무시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td> </tr> <tr> <td>2014.04</td> <td>e-BESS로 변경됨</td> </tr> <tr> <td>2016.03.01</td> <td>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에 따라 에너지성능 부문에서 택1하여 적용 (에너지성능 부문 : e-BESS,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절감기술)</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1.07.20	BESS : 공공건축물 3천㎡이상, 민간건축물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업무시설,공동주택)	2013.04.01	BESS : 연면적 3천㎡이상 신축 업무시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2014.04	e-BESS로 변경됨	2016.03.0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에 따라 에너지성능 부문에서 택1하여 적용 (에너지성능 부문 : e-BESS,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절감기술)	<p>·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연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시행일 기준</td> <td>2014.12.25</td> <td>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td> </tr> <tr> <td>2016.12.06</td> <td>인증기준 일부개정</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4.12.25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2016.12.06	인증기준 일부개정	<p>· 국교부 에너지 소비총량제 연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시행일 기준</td> <td>2011.07.01</td> <td>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 만㎡ 이상 업무유사시설</td> </tr> <tr> <td>2013.09.01</td> <td>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유사시설</td> </tr> <tr> <td>2014.09.01</td> <td>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기관 신축 연면적 500㎡이상</td> </tr> <tr> <td>2016.01.01</td> <td>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기관 신축 연면적 500㎡이상</td> </tr> </tbody> </table> <p>*2014.09.01. 이후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인증서로 대체가능함.(등급 관계없음)</p>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1.07.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 만㎡ 이상 업무유사시설	2013.09.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유사시설	2014.09.01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기관 신축 연면적 500㎡이상	2016.01.01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기관 신축 연면적 500㎡이상	<p>·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연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에너지사용량 절감율</th> </tr> <tr> <th>60㎡이하</th> <th>60㎡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시행일 기준</td> <td>2009.10.20,</td> <td>10%</td> <td>15%</td> </tr> <tr> <td>2010.06.30,</td> <td>15%</td> <td>20%</td> </tr> <tr> <td>2012.11.01,</td> <td>25%</td> <td>30%</td> </tr> <tr> <td>2015.03.31,</td> <td>30%</td> <td>40%</td> </tr> <tr> <td>2016.01.01,</td> <td>30%</td> <td>40%</td> </tr> <tr> <td>2016.11.02,</td> <td>30%</td> <td>40%</td> </tr> </tbody> </table> <p>*위 전용면적별 에너지절감율을 만족하거나, 단열설계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적합판정</p>	구분	에너지사용량 절감율		60㎡이하	60㎡초과	시행일 기준	2009.10.20,	10%	15%	2010.06.30,	15%	20%	2012.11.01,	25%	30%	2015.03.31,	30%	40%	2016.01.01,	30%	40%	2016.11.02,	30%	40%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1.07.20	BESS : 공공건축물 3천㎡이상, 민간건축물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업무시설,공동주택)																																																							
	2013.04.01	BESS : 연면적 3천㎡이상 신축 업무시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2014.04	e-BESS로 변경됨																																																							
	2016.03.0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에 따라 에너지성능 부문에서 택1하여 적용 (에너지성능 부문 : e-BESS,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절감기술)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4.12.25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2016.12.06	인증기준 일부개정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1.07.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 만㎡ 이상 업무유사시설																																																							
	2013.09.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유사시설																																																							
	2014.09.01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기관 신축 연면적 500㎡이상																																																							
	2016.01.01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기관 신축 연면적 500㎡이상																																																							
구분	에너지사용량 절감율																																																								
	60㎡이하	60㎡초과																																																							
시행일 기준	2009.10.20,	10%	15%																																																						
	2010.06.30,	15%	20%																																																						
	2012.11.01,	25%	30%																																																						
	2015.03.31,	30%	40%																																																						
	2016.01.01,	30%	40%																																																						
	2016.11.02,	30%	40%																																																						
현재 적용기준	2014.04 - e-BESS (인터넷 접수)	2016.12.06.(시행일 기준)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822호)	2016.01.01.(시행일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108호)	2016.11.02.(시행일 기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8호)																																																					
특기사항	*중전 BESS기준으로 건축심의를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 현재 변경된 e-BES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재심의 및 재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함.	*경과조치사항 : 위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 / 위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는 중전의 규정을 적용함.	*경과조치사항 : 위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중전의 규정을 적용함.	*경과조치사항 : 위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 / 위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는 중전의 규정을 적용함.																																																					
법령검색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서울시청 · e-BESS 관련 자료 ⇒ 서울시청	· 주택법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 법제처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제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 법제처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국토교통부																																																					

■ 분야별 건축환경관련 인증 및 제도 요약-3

	건축환경관련 인증 제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구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결로방지성능평가	국토교통부 범죄예방환경설계																						
수행 및 제출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신고 신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시 																						
	근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1호" 제 8조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4조 "법률 제14122호"	근거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 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근거 *범죄예방 건축기준 - 부칙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8호"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의무대상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교육연구 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5조 "대통령령 제 27216호"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행령 제 10조 "대통령령 제27473호"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의3 "대통령령 제27216호"	근거 *건축법 제53조의2 "법을 제12989호"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대통령령 제26302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호"																						
시행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행일 기준</td> <td>2010.12.01.~2013.05.06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포함)</td> </tr> <tr> <td></td> <td>2014.05.07.~2017.01.0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0.12.01.~2013.05.06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포함)		2014.05.07.~2017.01.0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행일 기준</td> <td>1999.06.04.~2013.08.3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최초안~개정 기간</td> </tr> <tr> <td></td> <td>2013.09.01.~현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주거/비주거로 제출</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1999.06.04.~2013.08.3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최초안~개정 기간		2013.09.01.~현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주거/비주거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행일 기준</td> <td>2014.05.0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td> </tr> <tr> <td></td> <td>2015.03.16.~2016.12.0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4.05.0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		2015.03.16.~2016.12.0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건축기준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행일 기준</td> <td>2015.04.01 범죄예방 건축기준</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5.04.01 범죄예방 건축기준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0.12.01.~2013.05.06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포함)																									
	2014.05.07.~2017.01.0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1999.06.04.~2013.08.3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최초안~개정 기간																									
	2013.09.01.~현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주거/비주거로 제출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4.05.0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																									
	2015.03.16.~2016.12.0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5.04.01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4.05.07. 이후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에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으로 명칭 변경 *2014.05.07. 이후로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 의무적용으로 변경	*2013.09.01. 이후로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용도 9개에서 주거/비주거로 제출,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실완료해야 했지만, 2015.03.16.개정안 이후로는 착공신고 기준등에 관한 규칙" 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별표1]로 이동	*2013.05.07.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신청전에 성능평가를 전까지 성능평가 완료로 개정됨.																							
현재 적용기준	2016.12.06.(시행일 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1호)	2016.01.01.(시행일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108호)	2016.12.07.(시행일 기준)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835호)	2014.04.01.(시행일 기준) -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호)																						
특기사항	*경과조치사항 : 위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신청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경과조치사항 : 위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위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함.	*2015.04.0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2015.04.01. 이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령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 법제처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제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법제처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법제처 · 범죄예방 건축기준 ⇒ 국토교통부 																						

■ 분야별 건축환경관련 인증 및 제도 요약-4

	건축환경관련 인증 제도																															
	서울시 범죄예방 환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수질오염 총량제	서울시 저영향개발																												
수행 및 제출 시점	<p>· 사업계획승인 접수시</p> <p>근거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p>	<p>· 사업계획승인 접수전</p> <p>근거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별표1 2.개발사업 대통령령 제25942호 *자연재해 대책법 제 4조 "법률 제1257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8조, 제30조 "법률 제12989호"</p>	<p>· 사업계획승인 접수시</p> <p>근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환경부훈령 제1222호"</p>	<p>· 사업계획승인 접수전</p> <p>근거 *서울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 8조, 제 9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page9</p>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서울시 재정비 촉진(뉴타운) 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 서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대책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 · 지자체별 수질오염배출 부하량 할당계획 · 수질오염총량 관리기술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의무대상 (공통)	<p>·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의 공동주택 (도시재정비 촉진구역)</p> <p>근거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6241호"</p>	<p>·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재개발)으로 개발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재건축사업이면서 개발부지면적이 5,000㎡ 이상, 다른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은 포함됨)</p> <p>근거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별표1 2.개발사업 대통령령 제25942호</p>	<p>·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p> <p>· 특대유역에서 숙박업, 식품점영업 및 오수배출 시설 설치사업</p> <p>*반드시 각 시,도청의 물관리,수질관리,환경과에 문의 필요 서울시 물관리 정책과 02-2133-3771</p> <p>근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환경부훈령 제1222호</p>	<p>· 서울시 내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공공청사,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학교, 건축물 등)</p> <p>·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인건축물 (빗물관리시설 권고지만 사전협의때 대부분 의무적용)</p> <p>근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page9</p>																												
시행 연혁	<p>·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연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시행일 기준</td> <td>2006.11.20, ~2010.01.06</td> <td>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td> </tr> <tr> <td>2010.01.07, ~2014.10.20</td> <td>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조항 신설</td> </tr> <tr> <td>2016.5.19.</td> <td>일부개정</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06.11.20, ~2010.01.06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2010.01.07, ~2014.10.20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조항 신설	2016.5.19.	일부개정	-	<p>·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연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시행일 기준</td> <td>2010.10.29</td> <td>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정</td> </tr> <tr> <td>2013.05.09</td> <td>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td> </tr> <tr> <td rowspan="2">2016.06.29</td> <td>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0.10.29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정	2013.05.09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2016.06.29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p>·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시행일 기준</td> <td>2014.02.09</td> <td>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td> </tr> <tr> <td>2015.01.01</td> <td rowspan="4">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개정</td> </tr> <tr> <td>2015.05.14</td> </tr> <tr> <td>2015.08.31</td> </tr> <tr> <td>2015.10.08</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4.02.09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	2015.01.01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개정	2015.05.14	2015.08.31	2015.10.08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06.11.20, ~2010.01.06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2010.01.07, ~2014.10.20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조항 신설																														
	2016.5.19.	일부개정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0.10.29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정																														
	2013.05.09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2016.06.29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4.02.09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																														
	2015.01.01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개정																														
	2015.05.14																															
	2015.08.31																															
	2015.10.08																															
현재 적용기준	<p>· 서울시 재정비 촉진(뉴타운) 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균형발전본부 2009년 3월 제정</p>	<p>*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별표1 2.개발사업 (대통령령 제25942호)</p>	<p>*2016.06.29.(시행일 기준)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222호)</p>	<p>·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서울시 조례)</p>																												
특기사항	-	-	-	<p>*2014.02.09. 시행일 당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4.02.0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이전에 건축심의 및 인허가 완료 사업 또한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되, 완료된 종전 계획의 우수저류조 및 침투 계획을 저영향개발 협의서에 반영하여 통보토록함.</p>																												
법령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서울시 자치법규 · 서울시 재정비 촉진(뉴타운) 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대책법 ⇒ 법제처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 법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환경부 · 물환경정보시스템 ⇒ http://water.nier.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시 환경과 ·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서울시 환경과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 서울시 환경과 																												

■ 분야별 건축환경관련 인증 및 제도 요약-5

	건축환경관련 인증 제도																					
	소음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서울시 및 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강동구 가이드라인																		
수행 및 제출 시점	·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 사용검사 신청 제출시 근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4조 ①, ②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5호"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완료전까지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⑤항 3호 "대통령령 제27830호"	· 정해진 시기 없으나, 통상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시행인가 득 이후~착공전 기간에 완료함.	·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근거 *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적용 방법 참고																		
관련법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의무대상 (공동)	· 모든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 :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도로 관리청가 소음방지대책 미 리협약이 필요함 -고속국도로부터 300m이내에 주택건설하는 경우 -일반국도와 특별시도,광역시도로부터 150 미터 이내 주택건설하는 경우 근거 *주택법 제21조의5 "법률 제129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통령령 제26226호"	·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①항 7호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①항 5호 "법률 제139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①항 7호 "법률 제14542호"	· 서울시 내 연면적 2,000㎡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 서울시 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조 "법률 제13884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①,②항 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6302호"	· 300세대 이상 규모의 재건축정비사업 및 주택건 설사업 근거 ·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 연혁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행일 기준</td> <td>2007.12.21.~ 2018.0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td> </tr> </tbody> </table>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행일 기준</td> <td>2017.02.04,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td> </tr> </tbody> </table>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행일 기준</td> <td>2015.12.29, ~2017.07.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td> </tr> </tbody> </table>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07.12.21.~ 2018.0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7.02.04,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5.12.29, ~2017.07.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연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시행일 기준</td> <td>2014.07.17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전부개정</td> </tr> <tr> <td>2015.10.08 일부개정</td> </tr> <tr> <td>2016.07.14 일부개정</td> </tr> </tbody> </table> *2014.07.17.이후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 명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로 전부개정됨.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4.07.17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전부개정	2015.10.08 일부개정	2016.07.14 일부개정	·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연혁 2010.02.22.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수 립 및 시행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07.12.21.~ 2018.0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7.02.04,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5.12.29, ~2017.07.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분	연혁 내용																					
시행일 기준	2014.07.17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전부개정																					
	2015.10.08 일부개정																					
	2016.07.14 일부개정																					
현재 적용기준	*2015.07.01.(시행일 기준) - 주택법 (법률 제12989호) *2015.07.01.(시행일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226호)	*2018.02.09.(시행일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567호) *2017.07.18.(시행일 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82호) *2017.02.04.(시행일 기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7호)	*2016.07.14.(시행일 기준)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 조례 (법률 제6302호)	*2010.02.22. -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특기사항	-	-	중전 규정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 없음	-																		
법령검색	· 주택법 ⇒ 법제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법제처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법제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법제처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서울시 조례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 규칙 ⇒ 서울시 조례	·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 강동구청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 강동구청																		